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5. 17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다대포 공설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하여 설치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,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기준 등을 신설함(안 제12조)
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주관하는 행사운영요원 및 근무요원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- 다.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27조(사용료)
- 입법예고 : 2002. 4. 25 ~ 5. 15, 주민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사용료의 징수) ① 해수욕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당일의 수입금은 익일 오전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운영요원
2.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
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4조(위탁관리)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샤워장 시설 사용료(제12조 관련)

구 분	사 용 시 간	사 용 료	비 고
일 반	1회	1,000원	
고등학생 이하	1회	500원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기간 :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으로 한다. ○ 운영시간 : 10:00 ~ 18:00 ※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간 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. ○ 1회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○ 10분 초과시에는 1회 사용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며, 샤워장 사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시간 사용을 금한다. 		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12조(사용료의 징수) ①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③사용료의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당일의 수입금은 익일 오전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3조(사용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운영요원 2.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p><신설></p>	<p>제14조(위탁관리)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.</p>
<p>제12조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